

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6. 30. (화)

총 5페이지

2026년 6월 30일 전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11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전북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총 5장

담당자

김미선 센터장

연락처

063-288-8297

성 명 서

법 개정 6년, 정부는 진화하는 성착취를 방조하는
이중적 법체계를 폐기하고 사법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 책임 지원 체계를 즉각 구축하라!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명백한 ‘성착취’로 규정하고 아동·청
소년들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바라보겠다는 엄중한 선언이자 역사
적인 진전이였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국가의 지원 체
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 양상은 날로 자연령화·지능화되어 가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가의 법·제도와 지원 인프라는 여전히 모순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전국 네트워크와 전북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현장의 비장한 각오로 정부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향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한다.

1. ‘피해자’라 부르며 낙인하는 국가, 사법 현장의 2차 가해와 이중적 법체계를 규탄한다.

현장에서 만나는 아동·청소년들은 결코 개인의 잘못된 비행이나 선택으로 성착취에 노출된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 학대, 방임,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립, 가출 등 아동·청소년들의 취약한 상황과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접근하는 가해자들에 의해 착취 구조 안으로 유입된 명백한 폭력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지역 전담 센터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 피해 상황 이후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서와 학교, 보호자 등 주변인으로부터 “너도 잘못했다”라는 의미의 비난 섞인 눈빛과 언어로 심심치 않게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법은 개정되었으나 인식은 여전히 과거 ‘대상 아동·청소년(처벌 대상)’을 보던 시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의심의 시선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와 상담 조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동일한 성착취 피해를 두고 기괴한 이중 잣대를 대는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존재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자발성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피해자’로 규정하지만, 「성매매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은 여전히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성적 피해에만 매몰되어 피해자에게 ‘비자발성’을 입증하도록 강요한다. 이 모순된 법체계가 성착취를 구조적 폭력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바라보게 만들며 사회적 통념을 공고히 하는 주범이다. 아동·청소년 시기의 성착취 구조는 성인이 되어서도 연장되므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법적 정의의 통합 없이는 진화하는 성착취 산업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

2. 가해자에게 면죄부 주는 사법부, 숨방망이 처벌과 형식적인 피해자 조력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그 나라의 법과 판결을 보면 국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

하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사법부의 판결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의 사유를 전제로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를 남발하고 있다.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며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조력의 역할도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있으나 마나 한 법과 제도 뒤에 숨어 사법부가 성착취를 방조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성매매를 정당한 거래로 바라보는 인식을 깨부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양형 기준 강화와 피해자 조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3. 방조하는 국가와 플랫폼 기업은 영국의 선례를 본받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

2025년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유입 경로는 채팅 앱 44%, SNS 38.7%로, 사실상 피해의 80% 이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X(구 트위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연령 등급이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된 것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며 단순한 연령 등급 조정만으로는 디지털 성착취 위협으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다.

범죄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규제 없이 방치하는 국가는 이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이다.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착취 피해자 발굴, 플랫폼 신고 및 모니터링, 가해 영상물 삭제 요청 등 과중한 책임까지 모두 현장의 지원 센터 역할로 전가되고 있다.

이미 영국 등 국제사회는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아동 보호, 콘텐츠 주의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앱스토어 운영의 불공정성이 있을 경우 기업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 및 사이트 접근 차단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1999년 세계 최초로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스웨덴 역시 2025년 성매매 처벌법을 개정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행위 구매 및 시청·소지 행위까지 전면 확대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플랫폼의 자율적 조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매매 광고 삭제, 반복 가해 계정 차단, 위험 콘텐츠 탐지 기술 도입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강제할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컨트롤타

위'를 즉각 신설·운영해야 한다.

4. 사업 중심의 위탁 구조와 단 3명의 인력, 말뿐인 보호는 기만이다.

성착취 피해는 사건 해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자존감 저하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주거 불안정,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피해 이후에도 심각한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므로 회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장의 지원 센터가 제공하는 업무는 긴급구조·상담·심리·의료·법률·학업·자립 자활·사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통합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구상 당시 최소 7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언했다. 그러나 국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2021년 사업 시작 이래 현재까지 단 3명의 인력만을 배치하는 가혹한 환경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조차도 '위탁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고용과 사업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해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국의 17개 센터를 통해 구조부터 자립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정부의 안내는 현장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허술하고 빈약한 기만이다.

전북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역시 단 3명의 상담원이 전주, 군산, 익산을 비롯해 무주, 진안, 장수 등 14개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고용 불안 속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장기근속과 전문성 축적은 어려운 현실이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통합 지원 서비스를 박탈당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가는 더 이상 현장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와 수요, 이를 방치해 온 사법부와 플랫폼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다. 우리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개입과 행동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피해자에게 비자발성 입증을 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성매매방지법」을 즉각 개정하고 성매매 여성 및 아동·청소년을 전면 비범죄화하라!

하나. 사법부는 초범·합의·반성문을 빌미로 한 감형을 중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력히 강화하며 유명무실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하나. 정부는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에 준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시행하고 온라인 내 피해자 신속 발견 및 플랫폼 책임을 강제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

하나.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를 불안정한 위탁 ‘사업’이 아닌 국가 책임의 안정적인 ‘시설’ 체계로 전면 전환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가 제언에 따라 현장 지원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즉각 해소하라!

2026년 6월 30일

전북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